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해설

2018. 1.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목차

I. 지방교부세 개요	1
II.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및 추진	3
III. 소방안전교부세 성격	5
IV. 소방안전교부세 자원	6
V.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7
VI.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12
VII.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절차	14
VIII.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14
7 참고자료	15
참고 1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15~'18년)	17
참고 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대상사업	18
참고 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20
참고 4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21
참고 5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부세법시행령	28
참고 6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참고 7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대상사업 관련법령	49
참고 8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대상사업 관련법령	68
참고 9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전 연혁)	111

● 지방교부세 제도의 목적

- 중앙과 지방의 세원 불균형(국세 76.3 : 지방세 23.7, 2016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정도에 따라 그 재원을 보전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적절한 배분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 도모

● 지방교부세 제도의 성격

- 지방공유의 고유재원 : 국세의 일부가 지자체 공유의 세(稅)가 되어 지자체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 배분되는 재원(일종의 간접과징 형태의 지방세)
- 지방의 일반재원 :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단. 법령에 반하여 무제한적으로 자의적인 사용은 불가능
-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보완 : 국가와 지방 간 재정 재배분 방안의 일환으로 수직적인 재정 불균형을 보완

●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요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 보전
-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에서 발생하는 기준재정수요·수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연도 중에 발생한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지역현안수요, 재난복구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지방협력수요 등)에 대처하는 재원(보통교부세의 보완적 기능)
- 부동산교부세 : 2005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재산세를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신설되었으나, 2010년에 시·도세인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교부
- 소방안전교부세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2015년 신설
- ※ 분권교부세 : 2005년에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

●● 참고 : 지방교부세 운영 개요 비교

구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근거 법령	지방교부세법			
목적	재원보전 지자체간 불균형 시정	특별재정 수요대응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재원보전 지자체간 불균형 시정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재원 구성	내국세 19.24%의 97%	내국세 19.24%의 3%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20%	종합부동산세 총액
'18년 예산	42조 4,696억원	1조 3,135억원* * 지역현안특별교부세 4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0%	4,173억원	1조 7,801억원
용도	제한없음	조건 또는 용도지정	명시적 규정 없음	제한없음
배분 방법	수요대비 수입액 부족액 기준 공식배분	지역현안, 재난안전, 국가지방협력필요, 시책 등 심사배분	소방·안전시설 현황·소요, 노력, 재정여건 등 공식배분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 교육 등 공식배분
교부 대상	시·도 및 시·군 (광역2,기초5 불교부)	시·도 및 시·군·자치구	시·도	시·군·구 (세종, 제주포함)
자금 교부	분기별	수시배정	분기별	분기별

II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및 추진

● 도입배경

- '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15.1.1.시행)

● 도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 보전

● 그간 추진사항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시행('15.6.22)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시행('15.7.3)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지정('15.7.14)
-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3,141억) 시·도별 교부액 통보('15.7.22)
-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4,147억) 시·도별 교부액 통보('16.2.5)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공포·시행('16.9.8)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변경지정('16.10.19)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지정('16.10.5) 및 특수수요별 지원기준 지정('16.11.7)
-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4,588억) 시·도별 교부액 통보('16.12.29)
- 2016회계연도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547억) 시·도별 교부액 통보('17.4.25)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변경·지정('17.11.3)
-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4,173억) 시·도별 교부액 통보('17.12.28)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 공포('17.12.27)·시행('18.1.1)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시행('18.1.1)

●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분야: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비중으로 한다.
 - 1.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 2.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 3. 재정여건: 100분의 20
-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14.12.2.)

§ 부대의견

- (29)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소방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지원하며, 2016년부터는 새로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
- (30)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투자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재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 ‘세월호 3법’ 여야 합의문(2014.10.31.)

정부조직법

라.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한다.(이하생략)

III

소방안전교부세 성격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일반적인 성격 중 ‘지방공유의 고유재원’,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보완’적 성격은 동일
 - 다만,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라는 목적이 명기되어 있어 해당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부세의 일반적 성격인 ‘지방의 일반재원’과는 차이가 있으며, 특별교부세*처럼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특별교부세와도 차이가 있음
- *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직접적으로 사용조건이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목적성 교부세임.

●● 소방안전교부세와 타교부세의 성격차이

구 분(성격)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지방공유의 고유재원	○	○	○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보완	○	○	○
지방의 일반재원	○ (사용용도 지자체 자율)	× (조건지정 또는 용도제한)	△ (목적에 맞게 사용, 조건지정·용도제한은 불가능)

※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차이

-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원한다는 점은 비슷하나,
- 소방안전교부세는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하고 교부세를 교부받은 지방자치체가 대상사업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

IV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 재원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해당금액 + 정산액
- 규모 : ^(15년) 3,141억원 → ^(16년) 4,147억원 → ^(17년) 4,588억원 → ^(18년) 4,173억원
 * '16회계연도 정산액 : 547억원('17.4월, 기재부 → 시·도 직접교부)
 ⇒ 연도별 예산규모는 기획재정부 담배 반출량 추계에 따라 변동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5년 담배가격 인상시 신설)의 20% : 1갑당 118.8원

●●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

구분	세금명	'15년 이전	'15년 이후	비고
합계		1,550원	3,318원	
국세	소계	588원	1,868원	
	부가가치세 등	234원	433원	
	개별소비세	-	594원	20%(118.8원)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841원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세 (시·도세)	지방교육세	321원	443원	
지방세 (시·군세)	담배소비세	641원	1,007원	

※ 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 기존 126원 → 개정 529원(일반담배 594원의 90%수준으로 인상, '17.11.개정)

- 정산액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 정산액 처리 :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3항)
 ※ (+) 일 때 : 다음년도 추경 또는 다음 다음연도 본예산에 포함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절차에 따라 확정)
 (-) 일 때 : 다음 다음연도 교부액에서 감액
- 정산액 교부 : 차액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4조)
 ※ 2015회계연도 정산액(22,095백만원)은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포함하여 교부*하되 2015년도 교부액 산정 당시의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액 산정
 * 소방안전교부세의 2015년도 정산분은 (+)이나 2015년도 지방교부세·교부금의 총괄 정산분은 (-)로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에 포함하여 교부
 ※ 2016회계연도 정산액(54,672백만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시·도)로 직접 교부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지방교부세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재부에서 시·도로 직접 교부('17.4월)

- 교부기준 :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지방교부세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설정
 -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 100분의 40
 -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 100분의 40
 - 재정여건 : 100분의 20

교부기준

$$\text{시·도별 교부액} = \text{교부총액} \times [(\text{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times 40\%) + (\text{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times 40\%) + (\text{재정여건} \times 20\%)]$$

〈 개정전 〉 : 2017년의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및 정산액 교부기준

구분	소방분야 기준 (50%)	비율	안전분야 기준 (50%)	비율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14%	지방도로 위험도	7%
			지방하천 위험도	4%
	소방출동비율	3%	공유림 위험도	4%
			안전지수 소요비율	3%
특정소방대상물 수	3%	안전신고 비율	2%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15%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12%
			안전지수 개선비율	2%
			안전신고 개선율	1%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10%
재정여건(20%)	재정자주도			20%

※ 소방안전교부세의 10%이내에서 특수수요(대규모 사업) 별도 지원

〈 개정후 〉 : 2018년 이후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및 정산액 교부기준

구분	소방분야 기준 (65%)	비율	안전분야 기준 (35%)	비율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18%	지방도로 위험도	5%
			지방하천 위험도	4%
	소방출동비율	4%	안전지수 소요비율	3%
	소방공무원 수	4%	안전신고 비율	2%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16%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6%
			안전지수 개선비율	2%
	소방예산 확대노력률	5%	안전신고 개선율	1%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10%
재정여건(20%)	재정자주도			20%

※ 소방안전교부세의 10%이내에서 특수수요(대규모 사업) 별도 지원

●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교부 총액 + ∑ 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begin{aligned}
 & \left[\left\{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sum \text{시·도별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times 18\% \right. \right. \\
 & + \text{해당 시·도의 소방 출동비율} \times 4\% \\
 & + \left.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공무원 수}}{\sum \text{시·도별 소방공무원 수}} \times 4\% \right\} \\
 & + \left(\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위험도} \times 5\% \right. \\
 & + \left.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하천 위험도}}{\sum \text{시·도별 지방하천 위험도}} \times 4\% \right. \\
 & + \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소요비율} \times 3\% \\
 & + \left. \left. \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비율} \times 2\% \right) \right. \\
 & + \left.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특수 수요 소요 금액} - \frac{\sum \text{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text{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도 수}}}{\text{교부 총액} + \sum \text{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right) \right\} \\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시설 확충노력률}}{\sum \text{시·도별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times 16\% \right. \\
 & + \text{해당 시·도의 소방예산 확대노력률} \times 5\% \\
 & + \left.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시설 확충노력률}}{\sum \text{시·도별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times 6\% \right. \\
 & + \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개선비율} \times 2\% \\
 & + \left.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개선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개선율}} \times 1\% \right. \\
 & + \left.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sum \text{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times 10\% \right) \\
 & + \left(\frac{(1 - \text{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sum (1 - \text{시·도별 재정자주도})} \times 20\% \right)]
 \end{aligned}$$

- 해당 시·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교부기준 설명

- **[소방시설 투자소요]** 매년 발생하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및 소방공무원 인력충원에 따른 투자소요 등을 고려함
 - i) 노후·부족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18%) : 해당 연도에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소방장비 및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소방장비*의 교체·보강 비용
 - * 소방장비 중 현장활동에 필요한 주요 소방장비(기동장비, 보호장비, 정보통신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로 구체적인 장비명은 소방청장이 지정
 - ii) 소방 출동비율(4%) : 화재발생·구조출동·구급출동건수, 구급이송시간, 화재사망자 수
 - iii) 소방공무원 수(4%) :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 **[안전시설 투자소요]** 사고 발생비율, 사망 및 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경(도로·하천)을 지표화, 안전정도를 나타내는 안전지수와 안전 위해요소 신고건수를 고려하여 개선에 필요한 소요로 산정함
 - i) 지방도로 위험도(5%) : 지방도로 1km당 발생하는 사망자·부상자 발생비율 및 지방도로 길이의 비율
 - ii) 지방하천 위험도(4%) : 지방하천 길이의 비율과 인구수의 비율/2의 합
 - iii) 안전지수 소요비율(3%) : 지역안전지수 중 5개 분야* 반영, 등급이 낮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배정
 - * ① 자연재해 ② 화재 ③ 교통사고 ④ 안전사고(생활안전) ⑤ 감염병
 - iv) 안전신고 비율(2%) : 안전신고 건수 및 시·도 인구 천명당 안전신고 건수의 비율

- **[재난 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 및 소방분야 예산확대, 소방 및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평가
 - i) 소방시설 확충노력률(16%) : 전년대비 소방시설에 투자한 사업비의 비율
 - ii) 소방예산 확대노력률(5%) : 지자체 총 예산 대비 소방예산비율 및 소방예산비율개선율
 - iii) 안전시설 확충노력률(6%) : 전년대비 안전시설에 투자한 사업비의 비율
 - iv) 안전지수 개선비율(2%) : 지역안전지수 5개 분야의 전년대비 안전지수 개선비율, 전년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 일수록 더 많이 배정
 - v) 안전신고 개선율(1%) : 안전신고 중 공무원 1인당 수용(일부수용 포함)한 건수의 비율
 - vi)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10%)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중 소방안전교부세 중점사업(5배 가중치 부여) 및 재량사업에 사용한 비율
 - * 대상사업(중점사업 및 재량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소방분야는 소방청과 협의하여 지정)

- **[재정여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나타내는 지표
 - i) 재정여건(20%) : 재정자주도*의 역수, (1-재정자주도)
 - * 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지방채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교부기준 개정('18.1.1)내용 및 사유

- 제명변경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관련 조항 삭제
 -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라 특별교부세 교부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 되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관련 조항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
- 소방분야에 한해 소방청에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확인 권한 부여
 - 지방교부세법에 소방분야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청에서 집행현황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확인권한 부여
 - * 단,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소방·안전분야 교부기준 비율조정(기존 소방50% : 안전50% → 개정 소방65% : 안전35%)
- 소방공무원 수 지표 신설
 - 소방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개인안전장비 등 필수 소방장비의 투자 소요 증가
- 소방예산 확대노력률 지표 신설
 -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소방분야 투자확대 유도 필요
- 특정소방대상물 수 지표 삭제
 - 기존 교부기준 중 상관관계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 수와 소방출동비율 지표를 → 소방출동비율(3% → 4%)로 일원화
- 공유림 위험도 지표 삭제
 - 대상사업 중 공유림 안전정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투자실적 및 효과 미흡
 - * 지난 3년간('15~'17) 총 5.7억(연평균 1.9억), 안전분야 편성액 2,559억 중 0.2% 수준
-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비용(14% → 18%)
 - 교체·보강 소요비용 산출기준을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소요금액으로 한정하여 산정
 - * 단, 소방차량의 경우(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다음연도에 교체)는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발생하는 노후차량의 교체 금액으로 산정
- 소방시설 확충노력률(15% → 16%)
 - 소방분야에 시·도의 안정적 예산확보 노력 유도
- 지방도로 위험도(7% → 5%), 안전시설 확충노력률(12% → 6%)
 - 안전분야 교부기준 비율의 감소(기존 안전50% → 개정 안전35%)에 따른 반영비율 축소

●● 교부기준 개정('16.9.8)내용 및 사유

- 대상사업 이외에 사용시 페널티 부여
 -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외에 사용시 그만큼 다음다음연도 교부액에서 감액
 - ※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사용액부터 적용
-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 지원
 - 2016년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대상사업 중 사업의 규모 등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의 10% 이내에서 지원
 - *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방안 마련
- 안전지수 등급 개선현황 반영
 - 안전지수 등급만을 고려하여 교부(안전지수가 낮은 시·도에 많이 교부)하던 것을 도덕적 해이 등의 방지를 위해 안전지수 등급 개선현황을 함께 고려* 교부
 - * (현행) 안전지수 비율(5%) → (개정) 안전지수 소요비율(3%) + 개선비율(2%)
- 안전신고·처리비율 반영
 - 안전 위험요소 해소 및 안전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포탈 및 앱으로 신고한 안전신고 건수와 이 중 개선한 실적을 신규(3%)로 반영*
 - * 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비율×2% + 안전신고 개선율×1%
 - ※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반영비율은 하향(15%→12%)
- 중점사업에 대한 가중치 확대
 -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해 중점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투자하면 교부액이 더 교부되도록 중점사업에 대한 가중치 확대(3배→5배)*
 - * (현행) 중점사업에 사용한 비용×3 + 재량사업에 사용한 비용×1
 - (개정) 중점사업에 사용한 비용×5 + 재량사업에 사용한 비용×1
-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금액과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금액 지표 통합
 - 부족장비는 보강에 따라 점증적으로 부족률이 0%가 되나, 노후 소방장비는 매년 발생하여 노후·부족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간 격차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지표 통합*
 - * (현행)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7%) +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 금액(7%)
 - (개정)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14%)

- 대상사업 : 소방안전교부세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 할 수 있는 대상사업(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을 규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그 대상사업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 대상사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대상사업 지정 : 소방·안전 분야별로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정

※ 중점사업에 더 많이 사용할수록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

- 분야별 대상사업

소방분야 : 국고보조사업, 응급의료기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중점사업 : 소방차량, 보호·구조·구급장비 등 현장대응에 필요한 소방장비 관련사업
- 재량사업 : 중점사업 외의 소방환경 개선 및 현장대응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중점사업	① 주요 기동장비(소방차량) ② 보호장비 ③ 정보통신장비 ④ 구조장비 ⑤ 구급장비 ⑥ 긴급구조 시스템 및 장비확충·보강 ⑦ 소방교육 훈련기관 시설·장비보강 ⑧ 소방안전교육
재량사업	① 소방헬기 등 기타 기동장비 ② 안전체험관 건립 ③ 측정장비 ④ 소방출동로 확보(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⑤ 소방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⑥ 양보위반 단속장비 ⑦ 노후 소방관서 개선 ⑧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⑨ 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훈련

안전분야 : 국고보조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중점사업 : 사고 발생율이 높은 도로·하천·공유림의 안전확보, 시설물 안전점검사업 위주
- 재량사업 : 그 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중점사업	①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 ② 교통안전시설 ③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④ 노인보호구역 개선 ⑤ 하천 유지관리 ⑥ 공유림 안전정비 ⑦ 재난관리자원 ⑧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⑨ 저수지·댐 안전점검 ⑩ 해수욕장 안전관리 ⑪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⑫ 지역안전관리활동 강화 ⑬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
재량사업	① 안전체험관 건립 ②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③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④ 도시공원 안전유지관리 ⑤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⑥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⑦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⑧ 재해지도 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⑩ 급경사지 정밀진단 ⑪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⑫ 펌프장 유지·관리 ⑬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⑭ 지역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⑮ 재난대응역량강화 안전훈련 ⑯ 감염병 안전지수 개선 ⑰ 낚시어선 안전관리

● 특수수요 : 일반적 수요(노후·부족소방장비 개선 등) 외에 발생하는 대규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교부액의 10%이내에서 특수수요 지정 지원*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부령) 별표2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9월 30일까지 대상사업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 지정
- 시·도별 특수수요 소요금액은 해당 시·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특수수요 대상사업 :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 2016년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지정

*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 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방안 마련

● 특수수요 지원기준

- 소방헬기 : 기본규격 충족 등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소방헬기 구입 시 기준금액(230억원)의 50%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일괄 또는 분할 지원
- 안전체험관 :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안전체험관 건립 기준금액(대형·특성화 200억원, 중형 120억원)의 50%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분할 지원
- ※ 실제 사업비용이 더 작을 경우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 2018년도 특수수요 지원액 : 415억

- 소방헬기 : 230억
 - 서울·부산 : 각 115억
- 안전체험관 : 185억
 - 울산(특성화) : 90억 · 경기(대형) : 20억 · 경남·제주(중형) : 각 25억
 - 인천(특성화) : 10억 · 광주(대형) : 10억 · 충북(중형) : 5억

● 2018년이후 특수수요 지정사업에 대한 시·도별 지원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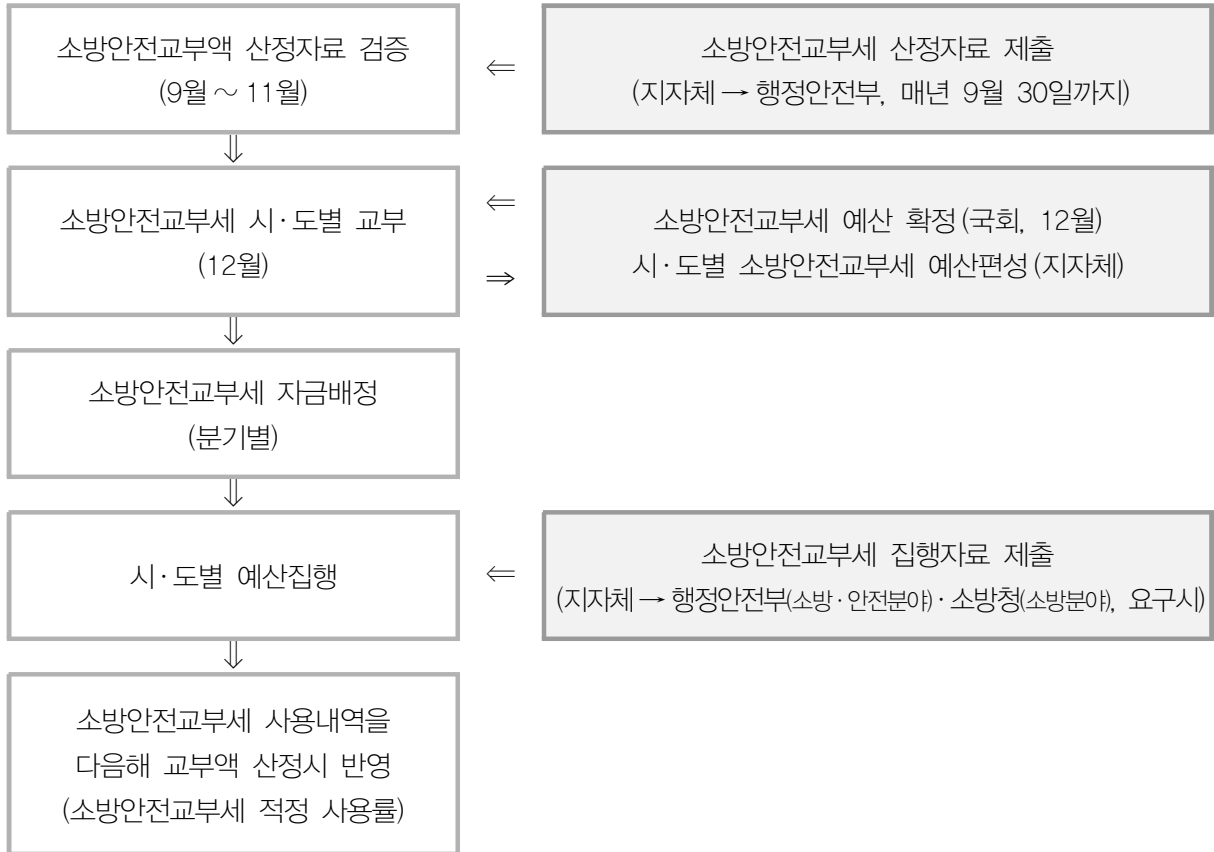
- 소방헬기 : 2018~2023, 단 기본규격 충족 등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의가 되었을 때 지원
 - 지원순서 : ① 서울 ② 부산 1 ③ 대구 ④ 전남 ⑤ 전북 ⑥ 광주 ⑦ 인천 ⑧ 부산 2
- 안전체험관 : 2018~2020
 - 1단계('17~'19) : 울산·경기·경남·제주, 2단계('18~'20) : 서울·인천·광주·충북

☞ 2017년도 특수수요 지원액 : 184.6억

- 소방헬기* : 강원 64.6억, 제주 90억
 - * 강원 : 230억(기준금액) 중 추락헬기 보험지급금 46억을 제외한 184억의 50%인 92억 중 '15년 국비로 기 지원된 27억을 제외한 65억 한도내 지원
 - 제주 : 300억(기준금액)의 50%인 150억 중 '15년 국비로 기 지원된 45억을 제외한 105억 한도내 지원
- 안전체험관 : 울산(특성화) 10억, 경기(대형) 10억, 경남(중형) 5억, 제주(중형) 5억

VII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절차



VIII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 '20년까지 교부금액 중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
- 중점사업에 집중투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금지
- 특수수요 관련 교부액은 해당사업에만 사용
-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과 교부액의 차액은 추가경정예에 편성하여 신속집행
- 세출예산 편성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표기("소")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 집행(타 용도 사용금지)
 - * 대상사업 이외에 사용시 해당금액만큼 다음다음년도 교부액에서 감액
- 기존 지방비 투자분의 대체재원이 아닌, 보완재원으로 사용(추가 사업실시)
 - ⇒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세출예산 편성현황 및 집행내역 수시확인
 - ※ 소방·안전시설 확충노력률,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차등교부

참고자료

참고 1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15~'18년)	17
참고 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대상사업	18
참고 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20
참고 4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21
참고 5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부세법시행령	28
참고 6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참고 7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대상사업 관련법령	49
참고 8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대상사업 관련법령	68
참고 9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111

참고 1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15~'18년)

● 시·도별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시·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5년도 정산분 포함)	'16년도 정산분**	
합 계	314,080,000	414,700,000	458,815,000	54,672,128	417,260,000
서울	21,285,770	29,249,077	29,277,065	3,856,062	38,957,359 * 헬기 11,500,000 포함
부산	19,476,744	24,381,619	24,934,207	3,214,359	34,425,285 * 헬기 11,500,000 포함
대구	20,471,161	24,045,720	27,823,361	3,170,076	21,731,924
인천	19,692,420	23,025,850	20,646,729	3,035,621	21,178,172 * 체험관 1,000,000 포함
광주	18,422,910	23,491,967	24,867,682	3,097,072	19,690,142 * 체험관 1,000,000 포함
대전	16,673,533	19,783,665	23,835,235	2,608,186	15,348,969
울산	14,777,489	20,392,911	22,567,970 * 체험관 1,000,000 포함	2,688,506	27,371,495 * 체험관 9,000,000 포함
세종	5,136,645	6,847,558	8,259,426	902,750	6,368,204
경기	26,516,592	34,852,309	43,788,614 * 체험관 1,000,000 포함	4,594,767	42,563,795 * 체험관 2,000,000 포함
강원	20,357,541	27,237,714	36,542,888 * 헬기 6,460,000 포함	3,590,894	25,820,190
충북	17,270,974	23,687,480	25,332,188	3,122,847	20,100,126 * 체험관 500,000 포함
충남	18,391,114	26,960,220	26,337,016	3,554,310	21,528,691
전북	18,302,763	26,129,175	25,219,886	3,444,749	21,156,754
전남	19,118,584	27,105,770	29,857,827	3,573,499	25,184,285
경북	22,524,264	29,676,163	28,201,009	3,912,367	24,450,795
경남 (창원소방)	19,801,826 (3,923,829)	26,571,711 (5,543,863)	29,347,741 * 체험관 500,000 포함 (5,360,999)	3,503,091 (730,877)	29,403,231 * 체험관 2,500,000 포함 (3,934,014)
제주	15,859,670	21,261,091	31,976,156 * 헬기 9,000,000, 체험관 500,000 포함	2,802,963	21,980,583 * 체험관 2,500,000 포함

* '15회계연도 정산분 : '17년도 예산에 포함하여 교부(지방교부세법 제5조)

** '16회계연도 정산분 :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 중 일부를 교부세·교부금 등의 정산에 사용하므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시·도)로 직접 교부(국가재정법 제90조)('17.4월)

참고 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대상사업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방안전 교부세 세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분야(국고보조, 응급의료기금사업은 제외)

구분	부문	사업명	대상사업	비고
중점 사업	소방시설 확충	기동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동장비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 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사다리차, 구조차, 조명배연차, 지휘차, 화재조사차, 무인방수차 구입	
		보호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호장비 중 방화복,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 공기호흡기, 헬멧, 공기공급기의 구입 및 호흡보호 장비 정비실의 구축·운영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신장비 중 유선무선 및 전산정보 장비의 교체 및 보강 사업	
		구조장비 교체·보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하는 구조장비의 구입	
		구급장비 교체·보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 및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하는 구급장비 중 선택장비의 구입	
		긴급구조 시스템 및 장비 확충·보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전산 시설의 확충 및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및 교체, 현장지휘센터, 현장지휘버스, 긴급구조통제단 설비차량의 구입	
	소방안전 관리강화	소방교육 훈련기관 시설·장비 보강	「소방공무원법」 제15조(교육훈련) 제2항에 따라 시도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교육대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소방차량 및 현장지휘능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포함) 보강	신규
소방안전교육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홍보에 관련장비(이동안전체험차량 포함) 구입 및 시스템 구축		
재량 사업	소방시설 확충	기동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동장비 중 소방헬기, 위성중계차의 구입 ※ 소방헬기는 기본규격 충족 등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소방헬기 구입 시 기준금액(230억원)의 50%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일괄 또는 분할 지원	* 특수 수요
		안전체험관 건립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체험시설의 건립 ※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안전체험관 건립 기준금액(대형·특성화 200억원, 중형 120억원)의 50%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분할 지원	* 특수 수요
		측정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감식장비 중 실체현미경, X촬영기,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의 구입 및 구축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신호등 및 신호제어기 포함) 구축·설치	
		소방 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진압장비 중 이동용소방펌프(이동용차량 포함)의 구입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중 비상소화전(연결 화재 진압 장비 포함) 설치	
		양보위반 단속 장비 교체·보강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장비 교체·보강	
		노후 소방 관서 개선	「소방기본법」 제3조의 소방기관의 청사 중 노후소방관서 개선사업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 심신보건을 위한 시설·장비의 구축, 보건안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동 규정 제34조에 따른 유해물질 차단시설 구축(단, 감염관리실은 제외)	
		소방안전 관리강화	재난대응역량 강화 소방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 중 소방·구조·구급 훈련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소방훈련

나. 안전분야(국고보조사업은 제외)

구분	부문	사업명	대상사업	비고
중점사업	안전시설확충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	「도로법」 제3조 및 제31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도로 신설·확장·포장공사 및 도로이용지원시설, 도로관리시설 제외)	
		교통안전시설사업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교통안전법」 제22조 및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보도확장 및 차로축소, 속도저감시설,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교차로 시설 등 설치 및 정비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의 표지판 정비,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안전횡스,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사업	
		하천유지관리	「하천법」 제25조,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유지·보수(하천공사제외), 재해예방에 필요한 부속시설의 설치사업	
		공유림 안전정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2호에 해당하는 산림의 안전시설물 정비	
		재난관리자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의 구입	
	안전관리강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지자체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저수지·댐 안전점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사업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지역안전관리 활동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지역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포함)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운동 및 홍보, 협의회 운영, 안전관련 시민단체 활동지원	
재량사업	안전시설확충	안전체험관 건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른 안전체험시설의 건립 ※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안전체험관 건립 기준금액(대형·특성화 200억원, 중형 120억원)의 50%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분할 지원	* 특수 수요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및 28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사업 (도로별 제설은 제외)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연안해역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인명구조 장비함 설치	
		도시공원 안전 유지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 제36조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도선, 유도선장의 안전시설 확충과 선령이 초과된 노후 유·도선의 신조	신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신규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 따른 지자체 소관 터널에 재난방송라디오, DMB 중계설비 설치	신규
	안전관리강화	재해지도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작성 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진단, 강화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적용으로 인해 폐쇄조치 된 어린이놀이시설의 복구비 지원	
		급경사지 정밀진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현지조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에 따른 지자체 소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펌프장 유자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배수펌프장의 유자관리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주민대피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안전관리강화	지역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역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재난대응역량강화 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소방·구조·구급 훈련 제외)		
	감염병 안전지수 개선사업	「결핵예방법」 제27조에 따른 결핵검진차량 및 X-선 발생장치의 구입	신규	
	낙시어선 안전관리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낙시어선 안전표지판 설치	신규	

참고 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규칙」 별표2(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의 노후·부족 소방장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노후 장비	기동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사다리차, 무인방수차, 지휘차, 구조차, 조명배연차, 화재조사차
	구조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동용 : 생활안전차 일반구조용 : 공기매트, 라이트라인, 구조용 들것, 통화식무전기 호흡 및 신체보호용 : 호스형 공기호흡기, 재호흡기, 대원위치추적 장비세트, 인명구조경보기, 구조헬멧 중량물작업용 : 유압엔진장비세트, 다목적유압장비, 에어백세트, 지지대, 다목적구조삼각대 절단용 : 전기식절단기 수난구조용 : 고무보트, 고속구조보트, 잠수장비세트(레굴레이터, 주호흡기, 보조호흡기, 게이저), 부력조절기 산악구조용 : 산악용 들것 탐색구조용 : 열화상카메라, 매물자영상탐지, 매물자음향탐지, 매물자전파탐지, 붕괴물경보기, 수중음파탐지, 수중영상탐지, 구조로봇 유해화학구조용 : 화학보호복 레벨 A, 인체제독텐트, 화생방들것, 폭발물방호복, 방폭담요, 방폭기방 측정용 : 화학작용제탐지, 유해물질분석기, 생물학작용제 분석기, 방사선측정기, 방사성 핵종분석기, 방사성오염감시기, 가스누출영상탐지기
	통신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통신 : 119교환기, 방송장비, 119수보대(터치패널, 지령/GIS단말기), 다중화(SAN스위치)장비, 영상장비(종합상황 모니터, 영상촬영카메라), 통신제어장비(차량상태관리단말기, 서·센터 출동지령단말기), 신고통합장비(무선통합장치) 전산정보 : 주전산기(지령서버1, 지령서버2, 지리정보(GIS)서버, 스토리지서버, 호제어서버, ARS 서버, TTS서버, 방송서버, IP방송제어서버, 녹취서버, 무선제어서버, 차량관제서버, 연계 서버, 통합운영상황관리서버, 백업서버, PMS서버, 119신고서비스확대서버, 시각동기화 서버, 소방민원정보 서버, 인사정보 서버, 구조구급활동정보 서버, 분배서버), 전송장비
	보호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 용기, 등지계, 면체, 보조마스크), 방화복, 헬멧
부족 장비	구조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동용 :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화학차, 화생방분석차, 화생방제독차, 생활안전차 일반구조용 : 공기매트, 라이트라인, 구조용 들것, 통화식무전기 호흡 및 신체보호용 : 호스형 공기호흡기, 재호흡기, 대원위치추적 장비세트, 인명구조경보기, 구조헬멧 중량물작업용 : 유압엔진장비세트, 다목적유압장비, 에어백세트, 지지대, 다목적구조삼각대 절단용 : 전기식절단기 수난구조용 : 고무보트, 고속구조보트, 잠수장비세트(레굴레이터, 주호흡기, 보조호흡기, 게이저), 부력조절기 산악구조용 : 산악용 들것 탐색구조용 : 열화상카메라, 매물자영상탐지, 매물자음향탐지, 매물자전파탐지, 붕괴물경보기, 수중음파탐지, 수중영상탐지, 구조로봇 유해화학구조용 : 화학보호복 레벨 A, 인체제독텐트, 화생방들것, 폭발물방호복, 방폭담요, 방폭기방 측정용 : 화학작용제탐지, 유해물질분석기, 생물학작용제 분석기, 방사선측정기, 방사성 핵종분석기, 방사성오염감시기, 가스누출영상탐지기
	구급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구급장비(CPR센터용 응급처치교육 실습장비 제외), 개인구급장비(안전모, 화생방마스크)
	보호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 용기, 등지계, 면체, 보조마스크), 방화복, 헬멧, 안전화, 보호장갑, 방화두건

참고 4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7. 12. 27.>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교부 총액 + ∑ 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left[\left\{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sum \text{시·도별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times 18\% \right. \right.$$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 출동비율}}{\text{해당 시·도의 소방공무원 수}} \times 4\%$$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공무원 수}}{\sum \text{시·도별 소방공무원 수}} \times 4\% \left.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위험도}}{\sum \text{시·도별 지방도로 위험도}} \times 5\% \right.$$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하천 위험도}}{\sum \text{시·도별 지방하천 위험도}} \times 4\%$$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소요비율}}{\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비율}} \times 3\%$$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비율}}{\text{해당 시·도의 특수수요}} \times 2\% \left.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특수수요} \times \sum \text{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 - \text{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도 수} \times \text{교부 총액} + \sum \text{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text{교부 총액} + \sum \text{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시설 확충노력률}}{\sum \text{시·도별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times 16\% \right.$$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예산 확대노력률}}{\text{해당 시·도의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times 5\%$$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시설 확충노력률}}{\sum \text{시·도별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times 6\%$$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개선비율}}{\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개선율}} \times 2\%$$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개선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개선율}} \times 1\%$$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sum \text{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times 10\% \left. \right)$$

$$+ \left(\frac{(1 - \text{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sum (1 - \text{시·도별 재정자주도})} \times 20\% \right)]$$

- 해당 시·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비고

1.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기준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전전년도에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2.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교체·보강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장비명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가.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동장비 중 전년도에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경과한 장비

나.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보호장비 중 해당 연도에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장비와 전년도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중 해당 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장비와 전년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3. 소방 출동비율의 산정기준

가. 소방 출동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 방 출동비율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발생 건수}}{\sum \text{시·도별 화재발생 건수}}$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조출동 건수}}{\sum \text{시·도별 구조출동 건수}}$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급출동 건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평균 이송시간}}{\sum (\text{시·도별 구급출동 건수} \times \text{시·도별 평균 이송시간})}$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사망자 수}}{\sum \text{시·도별 화재사망자 수}}$	× 10%

나. 화재사망자는 화재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구급출동 건수는 병원이송 건수를 말하며, 이송시간은 구급 출동지령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다. 소방 출동비율은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소방 출동비율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4.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말한다.

나. 소방공무원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지방도로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지방도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도로 위험도} = \text{지방도로 위험률} \times 0.7 + \text{지방도로 비율} \times 0.3$$

나. 지방도로 위험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도로 위험률}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times 0.7 + \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times 0.3)}{\sum \text{시도별(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times 0.7 + \text{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times 0.3)}$$

다. 지방도로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

라. 지방도로 비율은 시·도 총 지방도로 길이 대비 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지방도로 위험률은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지방도로 위험률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6. 지방하천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지방하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하천 위험도} = \text{지방하천 길이(km)의 비율} + (\text{인구 수의 비율} \times 1/2)$$

나.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한다.

다. 지방하천 길이의 비율은 시·도 총 지방하천 길이 대비 해당 시·도의 지방하천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수의 비율은 시·도 총 인구 수 대비 해당 시·도의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라. 지방하천 위험도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안전지수 소요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소요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안전지수}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 \right. \\ \text{소요비율}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화재 안전지수 등급}} \\ &+ \frac{\text{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 \\ &\left. + \frac{\text{해당 시·도의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 \right) \times 1/5 \end{aligned}$$

나. 안전지수 등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지수의 등급을 말한다.

다. 안전지수 소요비율은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안전신고 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안전신고 비율}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건수}}{\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건수}} \times 0.7 \right)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율}} \times 0.3 \right) \end{aligned}$$

나. 안전신고 건수는 전전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한 건수를 말한다.

다. 안전신고율은 전전년도의 시·도 인구 천명당 안전신고 건수를 말한다.

9. 특수수요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과 소방안전교부세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나. 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해당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0.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나.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책사업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과 배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1. 소방예산 확대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예산 확대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소방예산 확대노력률}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예산비율}}{\sum \text{시·도별 소방예산비율}} \times 0.5 \right)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예산비율 개선율}}{\sum \text{시·도별 소방예산비율 개선율}} \times 0.5 \right) \end{aligned}$$

나. 소방예산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예산비율} = \frac{\text{총 소방예산}}{\text{총 예산}}$$

다. 소방예산 개선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예산비율 개선율} = \frac{\text{소방예산비율}}{\text{전년도 소방예산비율}}$$

라. 총 예산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한다.

마. 총 소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한다.

바.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예산비율과 소방예산비율 개선율은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2.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안전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나.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은 제9조제1항 따른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의 결산 지출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3. 안전지수 개선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개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안전지수 개선비율} = & \left\{ \frac{(\text{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text{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자연재해 개선등급} - \text{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right. \\ &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 \text{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화재 개선등급} - \text{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 & + \frac{(\text{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text{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교통사고 개선등급} - \text{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text{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안전사고 개선등급} - \text{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 \left. + \frac{(\text{해당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text{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감염병 개선등급} - \text{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right\} \times 1/5 \end{aligned}$$

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에서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뺀 값을 말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에 대한 전년도와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이 모두 1등급인 시·도의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개선등급이 최대인 시·도의 개선등급의 1/2로 산정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개선등급은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된 개선등급의 1/4로 산정한다.

14. 안전신고 개선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개선율은 전전년도의 안전신고 건수 중 시·도 공무원 1인당 ‘수용’한 건수를 말하며, ‘일부수용 건수’는 1/2로 산정한다. 시·도 공무원은 전전년도 말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합한 수를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신고 개선율은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5.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 $\frac{(\text{전전년도 중점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times 5) + \text{전전년도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text{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	--

나. 가목의 전전년도 중점 및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2015년도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 중 전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 가목의 소방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6. 재정자주도의 산정기준

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정자주도를 말하며, 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와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정자주도를 순계(純計)하여 산정한다.

나. 재정자주도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관련 자료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 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삭제 <2014.12.31.>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1999.12.28.>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26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삭제 <2006.12.27.>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시행일 : 2012.7.1.] 제6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위비용의 조정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섬
2.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제1호에 따른 섬 지역은 제외한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지역관리비를 증액 산정할 수 있다.

④ 기준재정수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 이후의 측정단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이후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경비와 국가적인 시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補填)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多少) 및 밀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사회복지·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재정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으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측정항목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재정수요에 관한 자료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9조 삭제 <2011.12.30.>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4.12.31.>

제10조의2 삭제 <2014.12.31.>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35

다. 지역교육: 100분의 1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비중으로 한다.

1.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2.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3. 재정여건: 100분의 20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1의2.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 1의3.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 1의4.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1의5.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 1의6.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 1의7.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 1의8.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2의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② 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할 수 있다.
-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세를 분할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1회의 반환명령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시·도 : 40억

2. 시·군 및 자치구 : 25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반환액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⑥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 삭제 <2008.10.20.>

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설치·분리·병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준으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다시 산정.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

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 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26328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부 칙 <제28526호, 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6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12.27.>

제3조 삭제 <2017.12.27.>

제4조 삭제 <2017.12.27.>

제5조 삭제 <2017.12.27.>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중점사업 :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2. 재량사업 :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끝수계산)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교부기준란, 같은 표 제2호 교부기준란 단서, 별표 2 비고 제10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25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2017. 12. 27.>

[별표 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7. 12. 27.>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교부 총액 + ∑ 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begin{aligned}
 & \left[\left\{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sum \text{시·도별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times 18\% \right. \right. \\
 & + \text{해당 시·도의 소방 출동비율} \times 4\%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공무원 수}}{\sum \text{시·도별 소방공무원 수}} \times 4\% \left. \right) \\
 & + \left(\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위험도} \times 5\% \right.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하천 위험도}}{\sum \text{시·도별 지방하천 위험도}} \times 4\% \\
 & + \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소요비율} \times 3\% \\
 & + \left. \left. \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비율} \times 2\% \right) \right. \\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특수수요 소요 금액} - \frac{\sum \text{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sum \text{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도 수}}}{\text{교부 총액} + \sum \text{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right) \left. \right\} \\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시설 확충노력률}}{\sum \text{시·도별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times 16\% \right. \\
 & + \text{해당 시·도의 소방예산 확대노력률} \times 5\%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시설 확충노력률}}{\sum \text{시·도별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times 6\% \\
 & + \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개선비율} \times 2\%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개선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개선율}} \times 1\% \\
 & + \left. \left.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sum \text{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times 10\% \right) \right. \\
 & + \left(\frac{(1 - \text{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sum (1 - \text{시·도별 재정자주도})} \times 20\% \right) \left. \right]
 \end{aligned}$$

- 해당 시·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비 고

1.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기준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전전년도에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2.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교체·보강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장비명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가.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동장비 중 전년도에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경과한 장비

나.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보호장비 중 해당 연도에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장비와 전년도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중 해당 연도에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장비와 전년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3. 소방 출동비율의 산정기준

가. 소방 출동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 방 출동비율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발생 건수}}{\text{∑ 시·도별 화재발생 건수}} \times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조출동 건수}}{\text{∑ 시·도별 구조출동 건수}} \times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급출동 건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평균 이송시간}}{\text{∑ (시·도별 구급출동 건수} \times \text{시·도별 평균 이송시간)}} \times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사망자 수}}{\text{∑ 시·도별 화재사망자 수}} \times 10\%$

나. 화재사망자는 화재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구급 출동 건수는 병원이송 건수를 말하며, 이송시간은 구급 출동지령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다. 소방 출동비율은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소방 출동비율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4.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말한다.

나. 소방공무원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지방도로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지방도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도로 위험도} = \text{지방도로 위험률} \times 0.7 + \text{지방도로 비율} \times 0.3$$

나. 지방도로 위험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도로 위험률}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times 0.7 + \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times 0.3)}{\sum \text{시도별(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times 0.7 + \text{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times 0.3)}$$

- 다. 지방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
- 라. 지방도로 비율은 시·도 총 지방도로 길이 대비 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마. 지방도로 위험률은 전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지방도로 위험률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6. 지방하천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지방하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하천 위험도} = \text{지방하천 길이(km)의 비율} + (\text{인구 수의 비율} \times 1/2)$$

- 나.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한다.
- 다. 지방하천 길이의 비율은 시·도 총 지방하천 길이 대비 해당 시·도의 지방하천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수의 비율은 시·도 총 인구 수 대비 해당 시·도의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 라. 지방하천 위험도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안전지수 소요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소요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안전지수 소요비율}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화재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 \right) \times 1/5$$

나. 안전지수 등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지수의 등급을 말한다.

다. 안전지수 소요비율은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안전신고 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안전신고 비율}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건수}}{\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건수}} \times 0.7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율}} \times 0.3 \right)$$

나. 안전신고 건수는 전전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한 건수를 말한다.

다. 안전신고율은 전전년도의 시·도 인구 천명당 안전신고 건수를 말한다.

9. 특수수요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과 소방안전교부세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나. 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해당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0.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나.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책사업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과 배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1. 소방예산 확대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예산 확대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예산 확대노력률}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예산비율}}{\sum \text{시·도별 소방예산비율}} \times 0.5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예산비율 개선율}}{\sum \text{시·도별 소방예산비율 개선율}} \times 0.5 \right)$$

나. 소방예산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예산비율} = \frac{\text{총 소방예산}}{\text{총 예산}}$$

다. 소방예산 개선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예산비율 개선율} = \frac{\text{소방예산비율}}{\text{전년도 소방예산비율}}$$

라. 총 예산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한다.

마. 총 소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방 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한다.

바.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예산비율과 소방예산비율 개선율은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2.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안전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나.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은 제9조제1항 따른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의 결산 지출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3. 안전지수 개선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개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안전지수 개선비율} = & \\ & \left\{ \frac{(\text{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text{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자연재해 개선등급} - \text{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right\} \\ &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 \text{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화재 개선등급} - \text{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 & + \frac{(\text{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text{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교통사고 개선등급} - \text{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text{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안전사고 개선등급} - \text{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 + \frac{(\text{해당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text{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감염병 개선등급} - \text{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end{aligned} \times 1/5$$

- 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에서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뺀 값을 말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에 대한 전년도와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이 모두 1등급인 시·도의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개선등급이 최대인 시·도의 개선등급의 1/2로 산정한다.
-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개선등급은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된 개선등급의 1/4로 산정한다.

14. 안전신고 개선율의 산정기준

- 가. 안전신고 개선율은 전전년도의 안전신고 건수 중 시·도 공무원 1인당 ‘수용’한 건수를 말하며, ‘일부수용 건수’는 1/2로 산정한다. 시·도 공무원은 전전년도 말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합한 수를 말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신고 개선율은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5.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의 산정기준

- 가.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	$\frac{(\text{전전년도 중점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times 5) + \text{전전년도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text{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	---	--

- 나. 가목의 전전년도 중점 및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2015년도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 중 전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다. 가목의 소방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6. 재정자주도의 산정기준

- 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정자주도를 말하며, 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와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정자주도를 순계(純計)하여 산정한다.
- 나. 재정자주도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1-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참고 7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대상사업 관련법령

중점사업

1. 기동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동장비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사다리차, 구조차, 조명배연차, 지휘차, 화재조사차, 무인방수차 구입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3] 소방장비 내용연수
 - 소방펌프차 : 경형 펌프차, 소형 펌프차, 중형 펌프차, 대형 펌프차, 다목적 펌프차
 - 소방물탱크차 : 소형 물탱크차, 중형 물탱크차, 대형 물탱크차
 - 소방화학차 : 소형 화학차, 중형 화학차, 대형 화학차, 고성능 화학차, 내폭 화학차, 비활성가스 화학차
 - 화생방 대응차 : 생화학인명구조차, 화생방 분석차, 화생방 제독차
 - 소방사다리차 : 직진식 사다리차, 굴절식 사다리차, 복합굴절사다리차, 굴절차
 - 구조차 :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산악구조차, 다목적구조차, 인명구조전차, 첨단인명탐색차
 - 조명배연차 : 조명차, 배연차, 조연차
 - 지휘차 : 소형지휘차, 중형지휘차, 대형지휘차
 - 화재조사차 : 일반 화재조사차, 첨단 화재조사차
 - 무인방수차 : 무인방수차, 무인파괴방수차

- 「소방기본법」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 2018.12.27.] 제8조

-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6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해야 할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표준규격) ①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표기는 별표 2에 따른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20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소방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거나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와 소방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다를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내용연수) 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1. 소방자동차의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
 2.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써 제조회사가 정한 경제적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 ③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그 기간까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보호장비 교체 · 보강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호장비 중 방화복,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 공기호흡기, 헬멧, 공기공급기의 구입 및 호흡보호 장비 정비실의 구축 · 운영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3] 소방장비 내용연수
 - 방화복 : 방화복
 - 안전화 : 안전화, 구조화
 - 장갑(보호장갑) : 안전장갑, 진압장갑, 구조장갑, 산악용장갑, 멸균장갑
 - 방화두건 : 방화두건
 - 공기호흡기 : 공기호흡기 용기, 스쿠버공기통,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공기호흡기용 보조필터
 - 헬멧 : 안전헬멧, 진압헬멧, 구조헬멧, 경량구조헬멧, 산악헬멧, 수난구조헬멧, 방탄헬멧
 - 공기공급기 : 공기충전기,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공기공급기, 공기공급장비

-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14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 ② 장비운용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호흡보호장비,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흡보호장비”란 공기충전기, 공기호흡기(등지계, 용기, 면체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 잠수장비(부력조절기, 용기, 호흡조절기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호흡용 압축공기를 제조하거나 저장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2. “고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고압용기 중 공기호흡기 용기와 잠수장비 용기를 말한다.
 3. “충전실”이란 호흡용 공기를 고압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4. “정비실”이란 호흡보호장비의 검사·정비·세척 및 충전 등을 위한 시설과 부대설비가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5. “호흡용 공기”란 공기충전기로 고압용기에 충전하여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사용하는 공기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 제11조(정비실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은 호흡보호장비의 검사·세척·충전 및 정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면체 검사실은 분해조립 검사대, 면체 밀착도 검사설비, 정비기록대, 기록용 컴퓨터 및 바코드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용기 검사실은 밸브 분해 및 조립장치와 공기호흡기 용기 내부의 오염 또는 부식상태 등을 정확하게 관찰, 저장할 수 있는 내시경카메라를 갖추어야 한다.
 3. 용기 세척실은 온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세척설비 및 건조설비 등은 내식성 재료로 한다.
 4. 예비용기 보관실은 충전이 완료된 용기와 충전이 필요한 용기가 구분되도록 식별표지가 부착된 보관대를 비치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지역 특성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설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은 정비실의 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장비 교체 · 보강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신장비 중
유선 · 무선 및 전산정보장비의 교체 및 보강 사업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3] 소방장비 내용연수

- 유선통신장비
 - 개인유선통신장치 : IPT단말기, 디지털단말기, 일반전화기, 119교환기(IPT))
 - 이동식및임시용조명및액세서리 : 작업등
 - 전기케이블및부속품 : A/V케이블 드럼
 - 정류기 : 119용교환기정류기
- 무선통신장비
 - 개인무선통신장치 : 기지국(AM, UHF, VHF, VHF/UHF), 소방정(UHF), 원격기지국(UHF, VHF), 차량국(VHF), 차량용(UHF), 헬기용(AM), 휴대국(PS-LTE, AM, UHF), 휴대전화기, 위성전화기
 - 고정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 : 안테나, 위성안테나
 - 전화장비 : TRS기지국, 기지국(LTE), 중계기(LTE, TRS, UHF, VHF), 차량용(LTE, TRS), 휴대국(LTE, TRS)
 - 회로어셈블리및라디오주파수부품 : DVB-S2변조기
- 전산장비
 - 복합영상장비및컨트롤러 : HD엔코더
 - 음향기기및영상기기 : HD셋톱박스, LEDTV, A/V매트릭스스위치
 - 카메라 및 액세서리 : HD카메라, 카메라삼각대
 - 컴퓨터 : 119종합접수대, 업무용노트북, 차량용노트북, 행정용PC, 접수 및 출동지령단말기, ARS서버, AVL서버, CTI서버, DB서버, FAX서버, GIS서버, I/O서버, PMS서버, TTS서버, WAS서버, WEB서버, 녹취서버, 무선서버, 방송서버, 백업서버, 분배서버, 서버, 연계서버, 종합상황관리서버, 지령서버, 차량관제 모니터링, 차량정보단말(MDT), 태블릿컴퓨터
 - 컴퓨터디스플레이 : HD모니터, 모니터, 행정용모니터, 터치패널
 - 컴퓨터데이터입력장비 : 스캐너
 - 컴퓨터프린터 : 출동지령프린터

-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 시각동기화
- 등사기 : 다기능복사기, 복사기
- 매체저장장치 : 백업장비, 하드디스크어레이
- 영사기및소모품 : 빔프린터기
- 회의용 비디오 및 전화장비 : HD코덱
- 콜매니지먼트시스템또는액세서리 : 통합무선주장치, 통합방송주장치

4. 구조장비 교체 · 보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장비의 구입

-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른다.
 -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12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구조장비 보유기준」 [별표1] 구조장비 보유기준

- 기동용(16종)

- 구조차 :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산악구조차, 인명구조견차
- 생활안전차 : 생활안전차
- 화생방대응차 : 화생방분석차, 화생방제독차
- 현장지원차 : 견인차, 장비운반 트레일러, 유조차, 장비운반차
- 이륜차 : 전지형사륜차
- 행정 및 교육지원차 : 행정차(화물)
- 중장비 : 굴삭기, 지게차, 크레인차

- 일반구조용(27종)

- 구조용 사다리 : 구조용 사다리
- 개방장비 : 승강기 비상키, 차량 문개방기
- 조명기구 : 개인랜턴, 헤드랜턴, 휴대용 탐조등, 이동식 조명기구
- 총포류 : 로프 발사총, 마취용 석궁, 마취총
- 동물포획장비 세트 : 벌집제거장비, 동물포획장비, 동물이송장, 블로우건
- 일반구조 통신장비 : 통화식 무전기
- 이송 및 안전장비 : 구조용들것, 라이트라인
- 그 밖의 일반장비 : 개인장비가방, 장비휴대용 조끼, 구조용 공구세트, 다목적칼, 절연봉, 유리창 압착기, 반지 절단기, 로프보호기(철재), 케이블 구조세트, 전신형 안전벨트

- 산악구조용(55종)

- 등하강 및 확보장비 : 카라비너, 랜야드, 푸르직 다목적확보장비, 등강기, 하강기, 커넥터 세트, 다중 확보기, 퀵드로우, 회전고리장치(스위벨), 이동식 추락방지장비, 휴대용 장비걸이
- 산악용 안전벨트 : 하반신형 안전벨트
- 고리 : 자기확보줄, 박음질 코드로프
- 도르래 : 도르래, 케이블 도르래

- 슬링 : 웨빙류
- 등반용 로프 및 부대장비 : 로프, 로프장력측정기, 로프설치 및 회수장비, 로프 크램프, 로프 절단기
- 배낭 : 산악용 배낭, 로프 배낭
- 일반장비 : 동계용 산악구조복, 춘추용 산악구조복, 하계용 산악구조복, 산악용 모자, 산악용 구조화, 스페치, 비박용 생존키트, 망원경, 아이젠, 알파인 스틱
- 빙벽등반장비 세트 : 아이스바일, 빙벽용 크램폰, 빙벽화, 아이스 스크류
- 설상구조장비 세트 : 눈삽, 눈탐침봉, 피켈, 스노우 슈즈
- 암벽 및 거벽 등반장비 세트 : 암벽 앵커볼트, 피톤류, 초크, 핸드드릴, 확보캠류, 확보 너트류, 너트회수기, 앵커 스트랩
- 구조대상자 이송 및 안전장비 : 요구조자 안전벨트, 산악용 들것, 요구조자 이송장비, 홍염
- 산악용 근거리 통신장비 : 비콘
- 수난구조용(31종)
 - 잠수장비 : 다이브 컴퓨터, 잠수호흡기 세트, 부력조절기, 스킨핀, 스쿠버핀, 중량벨트, 스노클링세트, 건식 잠수복, 습식 잠수복, 수중칼, 수중 조명등, 잠수 장비가방(하드케이스 포함), 더블탱크 잠수장비, 수중 리프트백, 사체낭, 마커부이, 긴급 잠수장비
 - 수중통신장비 : 수중통신장비
 - 인명구조 및 안전장비 : 구명자켓, 구명부환, 수난구조용 튜브, 수심측정기, 수난용들것, 고속구조보트, 고무보트, 선외기, 제트스키, 수난구조로프, 수난구조용 서프보드, 분리형 장대세트, 수상빙판용 구조썰매
- 화생방 및 대테러구조용(31종)
 - 경계구역 설정라인 : 경계지역 설정라인
 - 제·소독장비 : 간이 인체제독텐트, 인체제독텐트, 휴대용 제독기, 중화제 살포기, 연막 소독기
 - 누출물 수거장비 : 누출물 진공수거기, 누출물 수거장비 세트, 오염물질 수거통, 방사능 물질 수거함
 - 누출방지장비 : 누출방지본드, 누출방지테이프, 파이프 누출방지슬리브, 흡착제, 공기 주입형 누출제어키트, 썬기형 누출제어키트, 염소용 누출제어키트
 - 화생방오염환자 이송장비 : 요구조자 이송장치, 요구조자 이송낭, 오염사체 이송낭
 - 시료채취 및 이송장비 : 에어샘플러, 샘플링 후송키트
 - 슬링백 세트 : 실링백
 - 에어리프팅 백 : 리프팅백

- 보호의류 등 : 내화학 장갑, 내화학 장화, 요구조자 보호의, 화학용 전면형마스크, 보호복 소독기,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 대테러 구조장비 : 신경작용제 증상억제치료제
- 측정용(18종)
 - 측정장비 : 가스측정기, PH농도측정기, 화학작용제 탐지기, 유해물질 분석기, 생물학 작용제 진단장비, 생물학작용제 분석기, 개인선량계, 방사선 측정기, 방사성 핵종 분석기, 방사성 오염감시기, X-ray 투시기, 잔류전류 검지기, 전류전압 측정계, CBRNE 정찰로봇, 원거리 유독가스탐지장비, 가스누출 영상탐지기, 거리 측정기, 풍향 풍속계
- 절단 구조용(9종)
 - 절단기 : 철선 절단기, 동력 절단기, 플라즈마 절단기, 전기식 절단기, 수중 절단기
 - 톱 : 체인톱, 왕복식톱
 - 드릴 : 코아드릴, 드릴
- 중량물 작업용(15종)
 - 유압장비 : 유압절단기, 배터리 유압장비세트, 유압램, 대형 유압엔진펌프, 휴대용 유압펌프, 유압전개기, 유압콤비틀
 - 휴대용원치 : 휴대용원치
 - 다목적구조삼각대 : 다목적 구조삼각대
 - 운전석 에어백 작동 방지장치 : 운전석 에어백 작동방지장치
 - 에어백 : 에어백
 - 지지대 : 지지대
 - 리프트 잭 : 리프트잭
 - 체인블럭 : 체인블럭
 - 벨트슬링 : 벨트슬링
- 탐색구조용(9종)
 - 적외선 야간투시경 : 적외선 야간투시경
 - 매몰자 탐지기 : 매몰자 영상탐지기, 매몰자 음향탐지기, 매몰자 전파탐지기
 - 붕괴물경보기 : 붕괴물 경보기
 - 수중탐지기 : 수중 음파탐지기, 수중 영상탐지기
 - 인명구조견 : 인명구조견
 - 공중수색장비 : 소방드론(무인기)
- 파괴용(4종)
 - 도끼 : 도끼
 - 방화문파괴기 : 문개방 기구
 - 해머드릴 : 해머드릴
 - 착암기 : 착암기

- 보호장비(20종)
 - 방호복 : 내전복 세트, 방열복 세트, 화학보호복(레벨A, 레벨C), 방사선 보호복
 - 구조장갑 : 구조장갑
 - 안전화 : 구조화
 - 헬멧 : 구조헬멧, 방탄헬멧
 - 대원탈출장비 : 대원탈출장비
 - 신체 및 관절보호대 : 관절보호대 세트
 - 대원위치추정장치 : 대원위치추적장치
 - 안전안경 : 안전안경
 - 인명구조경보기 : 인명구조경보기
 - 방탄조끼 : 방탄조끼
- 보조장비(4종)
 - 안전매트 : 안전매트리스, 팬식 공기안전매트
 - 이동식 송배풍기 : 이동식 송배풍기
 - 열화상카메라 : 열화상카메라

5. 구급장비 교체 · 보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 및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하는 구급장비 중 선택장비의 구입

-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 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영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구급장비 기준」 [별표 1]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 선택장비

- 전문구급장비(구급교육실습장비 포함) * 선택장비

용도	기능별	장비명	용도	기능별	장비명	
전문 의료 장비	기도확보유지	비디오후두경	전문 구급 교육 실습 장비	전문기술교육 실습장비 (소방학교용)	마네킨(골강주사)	
	호흡유지	휴대용인공호흡기			마네킨(기도삽관평가용)	
	순환유지	가슴압박품질측정기			마네킨(혈압맥박평가용)	
		기계식가슴압박장비			마네킨(12리드심전도)	
	외상처치	견인부목(성인용, 소아용)		구급대원교육 실습장비 (소방서용)	마네킨(전문실습)	
	환자이송	들것(계단이송용 또는 의자식)			마네킨(정맥주사)	
	검사장비				심전도감시장치(SpO2포함)	마네킨(기도확보 3종)
					메트로놈	마네킨(상처표시)
					혈관검출기	마네킨(골강주사)
					휴대용초음파진단기	마네킨(분만)
일산화탄소 및 메트헤모글로빈 측정 장비(CO/Met-Hb)			마네킨(기도삽관평가용)			
전문 구급 교육 실습 장비	전문기술교육 실습장비 (소방학교용)	시뮬레이터(성인)	마네킨(혈압맥박평가용)			
		시뮬레이터(소아)	마네킨(CPR 성인기본)			
		시뮬레이터(신생아)	마네킨(CPR 소아단순)			
		시뮬레이터(분만)	마네킨(유아, 성인기도폐쇄)			
		시뮬레이터(정맥)	마네킨(CPR 성인단순)			
			교육용제세동기			
			가슴압박품질측정기			
			기도폐쇄실습조끼			

- 개인구급장비 * 선택장비

용도	기능별	장비명
개인 구급 장비	대원보호	안전모
	유해화학 보호	화학보호복 C급
		화생방마스크
		제독제
		내화학 장화
	내화학 장갑	

● 「구급장비 기준」 [별표 2] 119항공구조구급대의 장비기준 * 선택장비

- 전문구급장비(구급교육실습장비 포함) * 선택장비

용도	기능별	장비명	용도	기능별	장비명	
전문 의료 장비	기도확보유지	비디오후두경	전문 의료 장비	검사장비	일산화탄소 및 메트헤모글로빈 측정 장비(CO/Met-Hb)	
	호흡유지	휴대용인공호흡기				
	순환유지	골강내주사세트	전문 구급 교육 실습 장비	구급대원교육 실습장비 (항공대용)	마네킨(전문실습)	
		가슴압박품질측정기			마네킨(정맥주사)	
	외상처치	견인부목(성인용, 소아용)			마네킨(기도확보 3종)	
	환자이송	들것(계단이송용 또는 의자식)			마네킨(상처표시)	
	검사장비				혈관검출기	마네킨(골강주사)
					휴대용초음파진단기	마네킨(분만)
					메트로놈	마네킨(기도삽관평가용)
						마네킨(혈압맥박평가용)

- 개인구급장비 * 선택장비

용도	기능별	장비명	용도	기능별	장비명
개인 구급 장비	대원보호	안전모	개인 구급 장비	감염관리	감염보호복세트 (안경, 장갑, 모자, 덧신포함)
		보안경(고글)			멸균장갑
		안전장갑(가죽)			방진마스크
		허리보호대		유해화학 보호	화학보호복 C급
		아이젠			화생방마스크
		손전등 또는 헤드랜턴			제독제
		개인구급장비기방(휴대용)			내화학 장화
		내화학 장갑			

6. 긴급구조시스템 및 장비 확충·보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전산시설의 확충 및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및 교체, 현장지휘센터, 현장지휘버스, 긴급구조통제단 설비차량의 구입

-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장비 보강(신규)

「소방공무원법」 제15조(교육훈련) 제2항에 따라 시도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교육대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소방차량 및 현장지휘능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포함) 보강

- 제15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 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시설) ①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기준
 - 옥내 훈련시설 : 전문구급 훈련장, 수난구조 훈련장, 화재조사 훈련장, 소방시설 실습장, 가상현실 훈련장
 - 옥외 훈련시설 : 소방종합 훈련탑, 산악구조 훈련장,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실물화재 훈련장, 대응전술 훈련장
 - 교육지원시설 : 업무시설, 강의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 주거시설, 저장시설

8. 소방안전교육(재량 → 중점)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홍보에 관한장비
(이동안전체험차량 포함) 구입 및 시스템 구축

-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시행규칙」 [별표 3의3]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준 ※ 대상사업에 소방안전교실 등 시설은 제외
 - 이동안전체험차량 :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갖춘 자동차
-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에 갖추어야 할 안전교육장비의 종류
 - 화재안전 교육용 : 안전체험복, 안전체험용 헬멧, 소화기, 물소화기, 연기소화기, 옥내소화전 모형장비, 화재모형 타켓, 가상화재 연출장비, 연기발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완강기,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계통 모형도, 화재대피용 마스크, 공기호흡기, 119신고 실습전화기
 - 생활안전 교육용 : 구명조끼, 구명환, 공기 튜브, 안전벨트, 개인로프, 가스안전 실습 모형도, 전기안전 실습 모형도
 - 교육 기자재 :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이동형 앰프, LCD 모니터, 디지털 캠코더
 - 기타 :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재량사업

9. 기동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제8조제3에 따른 기동장비 중 소방헬기*, 위성중계차의 구입

* 소방헬기는 기본규격 총속 등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의된 시·도에 한하여 소방헬기 구입 시 기준금액(230억원)의 50%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일괄 또는 분할 지원

●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 2018.12.27.] 제8조

10. 안전체험관 건립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체험시설*의 건립

*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안전체험관 건립 기준금액(대형·특성화 200억원, 중형 120억원)의 50%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분할 지원

-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 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1.17.>]

[시행일 : 2018.1.18.] 제66조의4

11. 측정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감식장비 중 실체현미경, X촬영기,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의 구입 및 구축

- 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④ 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제4항 관련)

12.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신호등 및 신호제어기 포함) 구축·설치

-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소방 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제8조제3에 따른 진압장비 중 이동용소방펌프(이동용차량 포함)의 구입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중 비상소화전(연결 화재진압 장비 포함) 설치

-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 2018.12.27.]
[시행일 : 2018.12.27.] 제8조
-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 2018.6.27.]
[시행일 : 2018.6.27.] 제10조

-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4. 양보위반 단속장비 교체·보강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장비 교체·보강

-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노후 소방관서 개선

「소방기본법」 제3조의 소방기관의 청사 중 노후소방관서 개선사업

※ 기존 노후소방관서의 이전신축, 개·증축 등은 가능, 신설 소방관서의 신축은 불가

-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 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 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화재진압장비·구조장비·구급장비·보호장비·정보통신장비·측정장비·보조장비를 말한다.
4.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불용의 결정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 및 정비,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7. “장비관리공무원”이란 소방장비의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6.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강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
심신보건을 위한 시설·장비의 구축, 보건안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등 규정 제34조에 따른 유해물질 차단시설(단, 감염관리실은 제외)

- 제8조(보건안전교육)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보건위생과 안전관리에 관한 신체적·정신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학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보건안전 과목을 편성하여 보건 의식 함양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일상적 보건안전 교육훈련)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19안전센터·구조대·구급대 단위별 근무 교대 시 안전관리교육
 2.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3. 소방서별 분기 1회 이상 정기집합 또는 영상교육
 4.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특별교육
- ② 일상적인 보건안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및 위생관리 요령
 2. 보건안전관리수칙 및 보건안전관리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3.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4. 안전장비, 보호구의 점검 및 유지관리
 5. 감수성 향상을 위한 현장유형별 위험예지훈련
 6. 정신건강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교육
 7.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절차
 8.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절차
 9. 그 밖에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안전관리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및 교안을 작성하거나 시청각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건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①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른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제거하는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참여식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① 소방관서의 장은 휴게실, 명상실 등을 설치·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34조(유해물질등 차단시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 활동의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감염균에 노출된 인체, 보호장비, 출동차량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전용 세탁기와 세척 및 소독장비를 119안전센터(구조대)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 하여야 한다.

17. 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 중 소방·구조·구급훈련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소방훈련

- 「재난안전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및 개선·보완조치 요구
 - ⑤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8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대상사업 관련법령

중점사업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

「도로법」 제3조 및 제31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
(도로 신설·확장·포장공사 및 도로이용지원시설, 도로관리시설 제외)

- 도로 :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포함)
 3. 궤도
 4.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넴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 도로의 부속물 :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 도로안전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 교통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 도로부대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 그 밖에 도로의 기능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줄임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2. 교통안전시설사업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사업

-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8조까지와 제11조 및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① 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3.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교통안전법」 제22조 및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보도확장 및 차로 축소, 속도저감시설,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교차로 시설 등 설치 및 정비

- 「교통안전법」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① 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활도로구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고시

4.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의
표지판 정비,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사업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5. 하천유지관리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제27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유지·보수(하천공사제외), 재해예방에 필요한 부속시설 설치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 가. 제방·(護岸)·(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나. 댐·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수로터널·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삭제 <2017.1.17>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⑨ 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공유림 안전정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림의
안전시설물 정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7. 재난관리자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의 구입

-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 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포대류·뭉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4.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재난관리자원 현황

- 공동활용 자원

· 자재 : 33종(세부품명 46종)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명	세부품명		품명	세부품명
구조구급	방열복	방열복	응급구호품	응급구호품 (1인용, 2인용)	
	마스크또는보조용품	방진마스크			
	산소포화도측정기	펄스옥시미터			
	적외선체온계	적외선체온계	긴급생활 안정자원	재가구호품 (1인용, 2인용, 3인용)	
의료방역	생석회	석회			
	독물학테스트키트 또는용품	탐지키트			
	탐지지	탐지지			
	화학작용제탐지기	화학작용제탐지기			
	가스마스크	전시용방독면	산업용방독마스크		
		화재대피마스크			
		안전세척기		제독제	
	백신	백신	재난현장 환경정비	활성탄	활성탄
	기타조제용약	기타의조제용약		오일펜스	오일펜스
	의료용살균소독제	의료용살균소독제		보호용작업복	보호복
살처분기축매몰저장조	살처분기축매몰저장조	기름제거제		기름제거제	
		매트형유흡착재		매트형유흡착재	
긴급생활 안정자원	응급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남자 (대, 중, 소)	교통대책	불형유흡착재	불형유흡착재
		응급구호세트여자 (대, 중, 소)		쿠션형유흡착재	쿠션형유흡착재
	취사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롤형유흡착재	롤형유흡착재
			기타	비식용소금	비식용소금
				염화칼슘	염화칼슘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고상제설제	액상제설제
			금속드럼	드럼통	
			비금속드럼	합성수지제통	골판지제드럼
				방사성폐기물취급장비	방사능물질폐기함
			응집제	유기·무기응집제	

· 장비 : 113종(세부품명 123종)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명	세부품명		품명	세부품명	
구조구급	유압식착암기	착암드릴링장치	의료방역	오염제거기	방역용소독기	
	천공용또는 시굴용기계	트럭적재식오거			제독용분무기·탱크장치	
	크롤러형천공기	크롤러형천공기			오염피복수거용백	
	역순환천공기	역순환천공기			제독용펌프장치	
	견인차	구난트럭		이동식음압장치	이동식음압장치	
	구급차	구급차				음압텐트
	소방사다리차	소방사다리차	체외순환기			체외순환기
	구조공작차	구조공작차	긴급생활 안정자원	유개트럭	유개트럭	
	조명차	조명차				세탁용이동차량
	소형보트	소형보트	에너지 기능복구	발전차	발전차	
	의료또는구조용 헬리콥터	탐색및구조용헬리콥터				배토기
	적재함형트레일러	적재함형트레일러	시설응급 복구	배토기	백호로더	
	특수용도형트레일러	특수용도형트레일러				그레이더
매몰자탐지기	매몰자탐지기	노면정지기				
공업고성능절단기	공업고성능절단기	견인식그레이더				
소방화학차	소방화학차	휠형노면정지기				
제독차	제독차					

중분류	소분류	
	품명	세부품명
시설응급 복구	백호	트랙터용백호
	궤도불도저	궤도형도저
	차륜도저	차륜형도저
	차륜굴착기	차륜형굴착기
	궤도굴착기	궤도형굴착기
	차륜로더	차륜형로더
	트랙로더	무한궤도형로더
	덤프트럭	덤프트럭
	고소작업차	고소작업트럭
	크레인불이트럭	크레인불이트럭
	하수구청소차	하수구청소차
	모래살포기	모래살포기
	전기톱	전기톱
	수중펌프	수중펌프, 수중인라인펌프
	엔진펌프	엔진펌프
	방사형압축기	방사형압축기
긴급통신 지원	위성전화기	위성전화기
	통신용중계기	무선중계기
재난현장 환경정비	동력살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스키드스티어로더	스키드스티어로더
	살수차	살수차
	가드레일청소차	가드레일청소차
	노면청소차	노면청소차
	영구차	영구차
	쓰레기수거용트럭	쓰레기수거용트럭
	오일스키머	오일스키머
	이동식폐유저장장치	이동식폐유용배유장치
	유압구조장비세트	유압구조장비세트
	맨홀구조기구	맨홀구조기구
	폐기물분쇄기	분쇄기
	압력또는증기청소기	고압세척기, 증기세척기
해변청소장비	해변청소장비	
교통대책	제설기	제설기
	결빙파쇄기	결빙파쇄기
	제설차	제설차
	도로관리용차량	다목적도로관리차
	트럭장착식제설기	트럭장착식제설기
기타	우물착정기	우물착정기
	잡목벌채기	벌목운반집게
	지게차	지게차
	차륜식기중기	차륜식크레인
	철탑기중기	타워크레인
	유압식트럭기중기	트럭크레인

중분류	소분류	
	품명	세부품명
기타	기중기선	기중기선
	궤도크레인	크롤러크레인
	레일크레인	레일식크레인
	지브크레인	지브크레인
	천장크레인	천장크레인
	트랙터크레인	트랙터크레인
	컨테이너	일반화물컨테이너
	화물트럭	화물트럭
	소방펌프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물탱크차
	배연차	배연차
	조연차	조연차
	무인방수탑차	무인방수탑차
	화재조사차	화재조사차
	지휘차	지휘차
	칼슘살포차	칼슘살포차
	이동집무실차	이동집무실차
	중계차	중계차
	탱크트럭	탱크트럭
	소방선	소방선
	구조선	구조선
	오염관리선	오염관리선
	청소선	청소선
	다목적헬리콥터	다목적헬리콥터
	방사선측정기	방사능탐지기 피폭선량계
	전력용변압기	전력용변압기
	에어텐트	에어텐트
	방사선감지경보기	방사선감지경보기
	등짐펌프	등짐펌프
	소방용펌프	소방용펌프
	기계화진화장비	기계화진화장비
	산불진화차	산불진화차
	유창청소선	유창청소선
	에인선	에인선
	바지선	바지선
	인양선	인양선
공기부양정	공기부양정	
병원선	병원선	
화학제품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전마선	전마선	
다목적비행기	다목적비행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기	

- 개별활용 자원

· 자재 : 5종(세부품명 6종)

· 장비 : 11종(세부품명 13종)

중분류	소분류	
	품명	세부품명
의료방역	의료용살충제	의료용살충제
	살균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위험물질방어이류	침투성보호의	
교통대책	제설함	제설함
사회질서유지	안전펜스	안전펜스

중분류	소분류	
	품명	세부품명
구조구급	산소수소용접기	산소수소용접기
	교류아크용접기	교류아크용접기
에너지 기능복구	디젤발전기	디젤발전기
	가스발전기	가솔린, 가스발전기
긴급통신 지원	양방향라디오	무선송수신기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무선통신장치
		주파수공용통신장치
기타	레이콘믹서트럭	레이콘믹서트럭
	유조트럭	유조트럭
	순시선	순시선
	경비선	경비선
	헬리콥터용소화물통	헬리콥터용소화물통

8.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지자체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⑧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저수지·댐 안전점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 제7조(안전점검) ① 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저수지·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10.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3. “안전관리자”란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리자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험성 평가”란 해수욕장 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안전시설 필요성, 안전관리요원·구조장비의 적정성 등을 도출하는 등의 활동으로서 제7조에 따라 규정된 평가를 말한다.
6.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해수욕장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확보·운영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5. 대국민 해수욕장 안전 홍보 계획
6.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 협업)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방관서,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1.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및 수상구조장비 지원
2. 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3. 그 밖의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지원

제6조(안전관리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리
2.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조장비 확보·운영 및 점검
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 배치·운영, 복무관리
4.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5.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제7조(위험성 평가)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해저 급경사면, 웅덩이, 갯골, 암초, 갯바위 등 위험지역 조사
2. 안전저해 시설 여부 조사
3. 안전시설 설치 규모 및 위치 판단
4.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 및 배치 위치 판단
5. 과거 사망사고 발생장소,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6.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관리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점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전망대, 감시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류
5. 구명환, 구명볼, 구명조끼 등 구명장구류
6.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7.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

③ 안전시설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영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위험성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적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영 제12조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물놀이구역 설치·관리) 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물놀이 구역과 수상레저구역 구분을 위한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해수욕장 운영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해수욕장 규모, 이용객 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미 자격자 중 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는 자격자의 보조요원으로서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
2.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자격(단,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 시에 한함)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규모, 이용객, 위험개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1호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④ 관리청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수욕장 배치 전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불, 구명조끼 등 구명장구 사용요령
2. 인명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사용 요령
3.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4. 물놀이 안전지도, 민원처리 등 근무요령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정보제공) 관리청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이용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통계)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를 관리하고, 매일 개장시간 종료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2.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생물 출현, 이안류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수상레저기구 이용제한) 관리청은 물놀이구역 내에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제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는 행위
 2.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 ② 관리청은 영 제13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관리청은 이용제한의 절차·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해양생물) ① 관리청은 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위험해양생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
 2. 그 밖의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해양생물 등
- ③ 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해양생물 출현 및 출현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
 2. 위험해양생물 방지막 설치
 3. 상어퇴치기 운용
 4. 위험해양생물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
 5. 위험해양생물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
 6.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7조(이안류) ① 관리청은 이안류에 의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이안류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안류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
 2. 이안류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
 3. 이안류 빈발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
 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8조(상황반 운영)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상황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관리청의 장이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현장 점검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사고 대응매뉴얼) ① 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고 대응매뉴얼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수 사고
2. 수상레저기구 사고
3. 백사장 응급환자 발생
4. 그 밖에 관리청이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③ 관리청은 사고 대응매뉴얼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요원 등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고, 개장기간 중 대응태세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통보)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사고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즉시보고 : 사망·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
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물놀이 안전 홍보) ①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휴대폰 문자메세지
4. 관리청 홈페이지
5.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6. 차량이용 방송
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제4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환류

제23조(개장시간 이외의 안전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개장시간 이외의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장기간 중 개장시간 이외의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수금지 계도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2. 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
3.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안전시설 정비) 관리청은 개장기간 중 사용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 평가회의) 관리청은 관계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 중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예산 확보)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요원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18.3.22.] 제2조

-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3.22.] 제16조

-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3.22.] 제16조의2

12. 지역안전관리 활동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지역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포함)

-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안전문화진흥에 관한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운동 및 홍보, 협의회 운영, 안전관련 시민단체 활동지원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1.17.>]

[시행일 : 2018.1.18.] 제66조의4

재량사업

14. 안전체험관 건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른 안전체험시설*의 건립

*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안전체험관 건립 기준금액(대형·특성화 200억원, 중형 120억원)의 50%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분할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1.17.>]

[시행일 : 2018.1.18.] 제66조의4

-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5.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사업(도로 제설은 제외)

-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6.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6.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연안해역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 제16조(안전관리시설물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 해역 위험구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인명구조장비함(이하 “안전관리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시설물은 국민들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표준화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시설물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7. 도시공원 안전 유지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사.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 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실에 한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하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경로당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증축(증축되는 면적은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연면적 이하이어야 한다)·재축·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 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로 할 것
7.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관람·이용·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 시설 및 편익시설로 할 것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운동시설·편익시설(일반 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9.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도시농업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농업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할 것
12.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할 것
 - ②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③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신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 제36조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도선, 유도선장의 안전시설 확충과 선령이 초과된 노후 유·도선의 신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신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10.25.] 제16조

- 시행령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0.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신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 따른 **지자체 소관** 터널에
재난방송(라디오, DMB) 중계설비 설치

-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1. 재해지도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작성 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 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 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 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 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진단, 강화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적용으로 인해 폐쇄조치 된 어린이놀이시설의 복구비 지원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12.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 급경사지 정밀진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현지조사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 나. 지방산림청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마. 삭제 <2012.12.18.>
 - 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요청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급경사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에 따른
지자체 소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관리청,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게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중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펌프장 유지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

-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른 방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3.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5.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에 따른 고지(高地) 배수로

26.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주민대피시설의 운영·유지관리**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

●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②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③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 지역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 협력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8. 재난대응역량강화 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소방·구조·구급 훈련 제외)

-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및 개선·보완조치 요구
- ⑤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감염병 안전지수 개선사업(신규)

「결핵예방법」 제27조에 따른 결핵검진차량 및 X-선 발생장치의 구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30. 낚시어선 안전관리(신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표지판 설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대와 낚시줄·낚시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 제27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2의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4.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 유류(油類)·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3.] [총리령 제1175호, 2015.7.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이하 “특별교부세”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및 자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원계획서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3조(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조건이나 용도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영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료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1.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2.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 교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끝수계산)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총리령 제1175호, 2015.7.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2015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제3조 관련)

대상사업	교부기준
1. 항구복구사업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确定的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p> $\text{교부금액} = \text{지방비 소요액} \times \text{부담금 비율} \times$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원율</p>
2. 응급복구사업	<p>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确定的한 금액.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确定的한 금액</p>

[별표 2]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begin{aligned}
 & \text{교부 총액} \times \left\{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Sigma \text{ 시·도별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 \times 7\% \right. \right. \\
 & + \frac{\text{해당 시·도의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 금액}}{\Sigma \text{ 시·도별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 금액}} \times 7\% \\
 & + \text{해당 시·도의 소방 출동비율} \times 3\% \\
 & + \frac{\text{해당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수}}{\Sigma \text{ 시·도별 특정소방대상물 수}} \times 3\% \left. \right) \\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위험도}}{\Sigma \text{ 시·도별 지방도로 위험도}} \times 7\% \right.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하천 위험도}}{\Sigma \text{ 시·도별 지방하천 위험도}} \times 4\% \\
 & + \frac{\text{해당 시·도의 공유림 위험도}}{\Sigma \text{ 시·도별 공유림 위험도}} \times 4\% \\
 & + \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비율} \times 5\% \left. \right) \\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시설 확충노력률}}{\Sigma \text{ 시·도별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times 15\% \right.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시설 확충노력률}}{\Sigma \text{ 시·도별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times 15\%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Sigma \text{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times 10\% \left. \right) \\
 & + \left(\frac{(1 - \text{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Sigma (1 - \text{시·도별 재정자주도})} \times 20\% \right) \}
 \end{aligned}$$

1.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노후 소방장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장비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1)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동장비, 보호장비 및 통신장비 중 같은 규칙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지난 장비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

나.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은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15년도 교부세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부족 소방장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장비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1)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동장비, 보호장비 및 통신장비 중 같은 규칙 별표 3에 따른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나.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 금액은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15년도 교부세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소방 출동비율의 산정기준

가. 소방 출동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 방 출동비율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발생 건수}}{\text{∑ 시·도별 화재발생 건수}}$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조출동 건수}}{\text{∑ 시·도별 구조출동 건수}}$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급출동 건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평균 이송시간}}{\text{∑ (시·도별 구급출동 건수} \times \text{시·도별 평균 이송시간)}}$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사망자 수}}{\text{∑ 시·도별 화재사망자 수}}$	× 10%

- 나. 화재사망자는 화재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구급출동 건수는 병원이송 건수를 말하며, 이송시간은 구급 출동지령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다. 소방 출동비율은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소방 출동비율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2015년도 교부세의 경우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소방 출동비율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2015년도 교부세와 2016년도 교부세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2개 연도 소방 출동비율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 수의 산정기준

- 가.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나.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전전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15년도 교부세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지방도로 위험도의 산정기준

- 가. 지방도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도로 위험도} = \frac{(\text{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times 0.7) + (\text{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times 0.3)}{\text{지방도로 1km당}}$
--

- 나. 지방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
- 다. 지방도로 위험도는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지방도로 위험도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2015년도 교부세와 2016년도 교부세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2개 연도 지방도로 위험도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6. 지방하천 위험도의 산정기준

- 가. 지방하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하천 위험도} = \frac{\text{지방하천 길이(km)의 비율} + (\text{인구 수의 비율} \times 1/2)}{\text{지방하천 길이(km)}}$
--

- 나.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한다.
- 다. 지방하천 길이의 비율은 시·도 총 지방하천 길이 대비 해당 시·도의 지방하천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수의 비율은 시·도 총 인구 수 대비 해당 시·도의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 라. 지방하천 위험도는 전전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공유림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공유림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공유림 위험도} = \text{공유림 면적(ha)의 비율} + (\text{인구 수의 비율} \times 1/2)$$

- 나. 공유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을 말한다.
 다. 공유림 면적의 비율은 시·도 총 공유림 면적 대비 해당 시·도의 공유림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수의 비율은 시·도 총 인구 수 대비 해당 시·도의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라. 공유림 위험도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안전지수 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안전지수 비율}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화재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 \right) \times 1/5$$

- 나. 안전지수 등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등급을 말한다.
 다. 안전지수 비율은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15년도 교부세의 경우 2015년 안전지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 나.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과 배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2015년도 교부세의 경우에는 2013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대비 2014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의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0.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안전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나.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은 제9조제1항 따른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의 결산 지출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2015년도 교부세의 경우에는 2013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대비 2014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의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1.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 \frac{(\text{전전년도 중점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times 3) + \text{전전년도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text{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교부세와 2016년도 교부세의 경우 모든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은 1로 한다.

12. 재정자주도의 산정기준

가. 재정자주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와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정자주도를 순계(純計)하여 산정한다.

$$\text{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나. 자체수입, 자주재원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 1) 자체수입 : 지방세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2)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3)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 산정기준: 일반회계, 최종예산

다. 재정자주도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 -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8.] [총리령 제1320호, 2016.9.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이하 “특별교부세”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및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원계획서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3조(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조건이나 용도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영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료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1. 중점사업 :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2. 재량사업 :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끝수계산)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총리령 제1175호, 2015.7.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2015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총리령 제1320호, 201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산식 중 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및 해당 시·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제3조 관련)

대상사업	교부기준
1. 항구복구사업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确定的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p> $\text{교부금액} = \text{지방비 소요액} \times \text{부담금 비율} \times$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원율</p>
2. 응급복구사업	<p>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确定的한 금액.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确定的한 금액</p>

[별표 2] <개정 2016. 9. 8.> [시행일:2017. 1. 1.] 산식 중 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및 해당 시·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부분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교부 총액 + ∑ 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left[\left\{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sum \text{시·도별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times 14\% \right. \right.$$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 출동비율}}{\sum \text{시·도별 소방 출동비율}} \times 3\%$$

$$+ \frac{\text{해당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수}}{\sum \text{시·도별 특정소방대상물 수}} \times 3\% \left.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위험도}}{\sum \text{시·도별 지방도로 위험도}} \times 7\% \right.$$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하천 위험도}}{\sum \text{시·도별 지방하천 위험도}} \times 4\%$$

$$+ \frac{\text{해당 시·도의 공유림 위험도}}{\sum \text{시·도별 공유림 위험도}} \times 4\%$$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소요비율}}{\sum \text{시·도별 안전지수 소요비율}} \times 3\%$$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비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비율}} \times 2\% \left. \right)$$

$$+ \left(\frac{\frac{\text{해당 시·도의 특수수요 소요 금액}}{\text{교부 총액} + \sum \text{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frac{\sum \text{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text{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도 수}}}{\text{교부 총액} + \sum \text{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시설 확충노력률}}{\sum \text{시·도별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times 15\% \right.$$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시설 확충노력률}}{\sum \text{시·도별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times 12\%$$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개선비율}}{\sum \text{시·도별 안전지수 개선비율}} \times 2\%$$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개선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개선율}} \times 1\%$$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sum \text{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times 10\% \left. \right)$$

$$+ \left(\frac{(1 - \text{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sum (1 - \text{시·도별 재정자주도})} \times 20\% \right)]$$

- 해당 시·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1.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기준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전전년도에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2.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교체·보강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장비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1)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동장비, 정보통신장비, 보호장비 중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지난 장비와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은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소방 출동비율의 산정기준

가. 소방 출동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 방 출동비율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발생 건수}}{\sum \text{시·도별 화재발생 건수}} \times 30\%$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조출동 건수}}{\sum \text{시·도별 구조출동 건수}} \times 30\%$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급출동 건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평균 이송시간}}{\sum (\text{시·도별 구급출동 건수} \times \text{시·도별 평균 이송시간})} \times 30\%$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사망자 수}}{\sum \text{시·도별 화재사망자 수}} \times 10\%$	× 10%

나. 화재사망자는 화재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구급출동 건수는 병원이송 건수를 말하며, 이송시간은 구급 출동지령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다. 소방 출동비율은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소방 출동비율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 수의 산정기준

가.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나.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지방도로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지방도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도로 위험도} = \frac{(\text{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times 0.7) + (\text{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times 0.3)}$
--

나. 지방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

다. 지방도로 위험도는 전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지방도로 위험도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6. 지방하천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지방하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하천 위험도} = \text{지방하천 길이(km)의 비율} + (\text{인구 수의 비율} \times 1/2)$

나.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한다.

다. 지방하천 길이의 비율은 시·도 총 지방하천 길이 대비 해당 시·도의 지방하천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수의 비율은 시·도 총 인구 수 대비 해당 시·도의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라. 지방하천 위험도는 전전전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공유림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공유림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공유림 위험도} = \text{공유림 면적(ha)의 비율} + (\text{인구 수의 비율} \times 1/2)$

나. 공유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을 말한다.

다. 공유림 면적의 비율은 시·도 총 공유림 면적 대비 해당 시·도의 공유림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수의 비율은 시·도 총 인구 수 대비 해당 시·도의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라. 공유림 위험도는 전전전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안전지수 소요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소요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안전지수 소요비율}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화재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 \right) \times 1/5$
--

나. 안전지수 등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등급을 말한다.

다. 안전지수 소요비율은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안전신고 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안전신고 비율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건수}}{\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건수}} \times 0.7$)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율}} \times 0.3$)

나. 안전신고 건수는 전전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한 건수를 말한다.

다. 안전신고율은 전전년도의 시·도 인구 천명당 안전신고 건수를 말한다.

10. 특수수요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과 소방안전교부세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나. 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해당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11.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	---	--

나.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책사업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과 배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2.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	---	--

- 나.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은 제9조제1항 따른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의 결산 지출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3. 안전지수 개선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개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안전지수 개선비율 =	{	(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	(해당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 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	
	+	(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	(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	(해당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 × 1/5
		Σ 시·도별 (자연재해 개선등급 - 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Σ 시·도별 (화재 개선등급 - 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Σ 시·도별 (교통사고 개선등급 - 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Σ 시·도별 (안전사고 개선등급 - 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Σ 시·도별 (감염병 개선등급 - 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에서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뺀 값을 말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에 대한 전전년도와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이 모두 1등급인 시·도의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개선등급이 최대인 시·도의 개선등급의 1/2로 산정한다.
- 라. 나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개선등급은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된 개선등급의 1/4로 산정한다.

14. 안전신고 개선율의 산정기준

- 가. 안전신고 개선율은 전전년도의 안전신고 건수 중 시·도 공무원 1인당 ‘수용’한 건수를 말하며, ‘일부수용 건수’는 1/2로 산정한다. 시·도 공무원은 전전년도 말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합한 수를 말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신고 개선율은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5.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	$\frac{(\text{전전년도 중점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times 5) + \text{전전년도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text{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중점 및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2015년도에 중점 및 재량사업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의 소방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 가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 및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6. 재정자주도의 산정기준

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정자주도를 말하며, 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와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정자주도를 순계(純計)하여 산정한다.

나. 재정자주도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이하 “특별교부세”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및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원계획서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3조(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조건이나 용도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영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17.7.26.>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1. 중점사업 :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2. 재량사업 :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 교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끝수계산)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총리령 제1175호, 2015.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2015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총리령 제1320호, 201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산식 중 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및 해당 시·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교부기준란, 같은 표 제2호 교부기준란 단서, 별표 2 비고 제10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64>까지 생략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제3조 관련)

대상사업	교부기준
1. 항구복구사업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p> $\text{교부금액} = \text{지방비 소요액} \times \text{부담금 비율} \times$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p>
2. 응급복구사업	<p>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확정한 금액.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 금액</p>

[별표 2] <개정 2017. 7. 26.>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교부 총액 + ∑ 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left[\left\{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sum \text{시·도별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times 14\% \right. \right.$$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 출동비율}}{\sum \text{시·도별 소방 출동비율}} \times 3\%$$

$$+ \frac{\text{해당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수}}{\sum \text{시·도별 특정소방대상물 수}} \times 3\% \left.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위험도}}{\sum \text{시·도별 지방도로 위험도}} \times 7\% \right.$$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하천 위험도}}{\sum \text{시·도별 지방하천 위험도}} \times 4\%$$

$$+ \frac{\text{해당 시·도의 공유림 위험도}}{\sum \text{시·도별 공유림 위험도}} \times 4\%$$

$$+ \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소요비율} \times 3\%$$

$$+ \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비율} \times 2\% \left.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특수수요 소요 금액} - \frac{\sum \text{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text{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도 수}}}{\text{교부 총액} + \sum \text{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시설 확충노력률}}{\sum \text{시·도별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times 15\% \right.$$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시설 확충노력률}}{\sum \text{시·도별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times 12\%$$

$$+ \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개선비율} \times 2\%$$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개선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개선율}} \times 1\%$$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sum \text{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times 10\% \left. \right)$$

$$+ \left(\frac{(1 - \text{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sum (1 - \text{시·도별 재정자주도})} \times 20\% \right) \left. \right\}$$

- 해당 시·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1.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기준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전전년도에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2.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교체·보강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장비명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동장비, 정보통신장비, 보호장비 중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지난 장비와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와 소방청장이 정하는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은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소방 출동비율의 산정기준

가. 소방 출동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 방 출동비율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발생 건수}}{\sum \text{시·도별 화재발생 건수}} \times 30\%$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조출동 건수}}{\sum \text{시·도별 구조출동 건수}} \times 30\%$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급출동 건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평균 이송시간}}{\sum (\text{시·도별 구급출동 건수} \times \text{시·도별 평균 이송시간})} \times 30\%$	× 30%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사망자 수}}{\sum \text{시·도별 화재사망자 수}} \times 10\%$	× 10%

나. 화재사망자는 화재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구급출동 건수는 병원이송 건수를 말하며, 이송시간은 구급 출동지령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다. 소방 출동비율은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소방 출동비율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 수의 산정기준

가.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나.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지방도로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지방도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도로 위험도 =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 0.7) +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 0.3)
------------	--

나. 지방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

다. 지방도로 위험도는 전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지방도로 위험도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6. 지방하천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지방하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하천 위험도 =	지방하천 길이(km)의 비율 + (인구 수의 비율 × 1/2)
------------	------------------------------------

나.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한다.

다. 지방하천 길이의 비율은 시·도 총 지방하천 길이 대비 해당 시·도의 지방하천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수의 비율은 시·도 총 인구 수 대비 해당 시·도의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라. 지방하천 위험도는 전전전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공유림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공유림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공유림 위험도 =	공유림 면적(ha)의 비율 + (인구 수의 비율 × 1/2)
-----------	-----------------------------------

나. 공유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을 말한다.

다. 공유림 면적의 비율은 시·도 총 공유림 면적 대비 해당 시·도의 공유림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수의 비율은 시·도 총 인구 수 대비 해당 시·도의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라. 공유림 위험도는 전전전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안전지수 소요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소요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안전지수 소요비율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화재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 \right) \times 1/5$
----------------	---

나. 안전지수 등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등급을 말한다.

다. 안전지수 소요비율은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안전신고 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안전신고 비율}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건수}}{\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건수}} \times 0.7 \righ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율}} \times 0.3 \right)$
--

나. 안전신고 건수는 전전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한 건수를 말한다.

다. 안전신고율은 전전년도의 시·도 인구 천명당 안전신고 건수를 말한다.

10. 특수수요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과 소방안전교부세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나. 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해당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1.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

나.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책사업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과 배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2.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의 산정기준

가.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안전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

- 나.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은 제9조제1항 따른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의 결산 지출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3. 안전지수 개선비율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개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안전지수 개선비율 =	{	$\frac{\text{(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자연재해 개선등급 - 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 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화재 개선등급 - 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교통사고 개선등급 - 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안전사고 개선등급 - 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frac{\text{(해당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감염병 개선등급 - 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 1/5

- 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에서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뺀 값을 말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에 대한 전전년도와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이 모두 1등급인 시·도의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개선등급이 최대인 시·도의 개선등급의 1/2로 산정한다.
- 라. 나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개선등급은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된 개선등급의 1/4로 산정한다.

14. 안전신고 개선율의 산정기준

- 가. 안전신고 개선율은 전전년도의 안전신고 건수 중 시·도 공무원 1인당 ‘수용’한 건수를 말하며, ‘일부수용 건수’는 1/2로 산정한다. 시·도 공무원은 전전년도 말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합한 수를 말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신고 개선율은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5.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의 산정기준

가.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	$\frac{(\text{전전년도 중점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times 5) + \text{전전년도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text{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중점 및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2015년도에 중점 및 재량사업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의 소방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 가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 및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16. 재정자주도의 산정기준

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정자주도를 말하며, 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와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정자주도를 순계(純計)하여 산정한다.

나. 재정자주도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해설

인 쇄 : 2018년 1월

발 행 : 2018년 1월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Tel. 044) 205-4161

Fax. 044) 205-8929
